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2-A호선 등 10개노선)] 조성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292(2003.11.28.)호로 최초 군포도시관리계획(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5-47(2025.03.31.)호로 결정(변경) 및 군포시 고시 제 2025-153(2025.12.02.)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6-71(2026.06.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2-A호선 등 10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군포 부곡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대로2-A호선 등 10개노선) 조성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46번지 일원 (4,501.6㎡)	2025.12.02. ~ 2026.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53-1번지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본 공고는 LH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물건조서 등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 (미등기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등 포함) 에게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향후 지적측량(분할 등), 변경 고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구계 및 편입면적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면적,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09.02.(수) ~ 2026.09.18.(금) 10:00~17:00

※ 열람기간 중 중식시간 (12:00 ~ 13:00) 및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33 디테크타워 A동 2층
전화 02-6177-4548 팩스 02-6177-8984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031-390-0502 팩스 031-390-0026

※ 주차 등의 사유로 가급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상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6.09.18.까지 도착)으로 서면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6년 9월 중순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진행 등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1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잔여지 매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안내 예정)
- 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1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1팀 ☎ 02-6177-4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장